

승강기제조·판매·설치계약서(교체공사)

풍납씨티극동아파트 (이하 "고객"이라 함)와 공동수급체(이하 "구성원들"이라 함)는 승강기 제조·판매·교체설치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 내역)

고객, 구성원들간에 매매되는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 제조·판매·교체설치 계약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총계약금액 : 일금 일십일억육천구백삼십만 원정(₩ 1,169,300,000)
- ② 공 급 가 액 : (₩ 1,063,000,000), 부가가치세 : (₩ 106,300,000)
- ③ 공사현장명 : 풍납씨티극동아파트 현장
설 치 장 소 :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 478
- ④ 계 약 기 간 : 계약 시 ~ 2024.09.30
- ⑤ 승강기 번호 / 대수 : 0065-231 ~ 246 / 16 대
- ⑥ 승강기 제품 / 모델 : GM1
- ⑦ 폐자재(고철) 처리 : 풍납씨티극동아파트

제 2 조 (대금 지급)

① 고객의 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와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지급시기	지급조건	지급대상
계약금	212,600,000	21,260,000	233,860,000	계약 시 (총 계약금액의 20%)	현금	구성원 A
1 차중도금	159,450,000	15,945,000	175,395,000	1 차수 완성검사 합격 시 (총 계약금액의 15%)	현금	구성원들
2 차중도금	159,450,000	15,945,000	175,395,000	2 차수 완성검사 합격 시 (총 계약금액의 15%)	현금	구성원들
3 차중도금	159,450,000	15,945,000	175,395,000	3 차수 완성검사 합격 시 (총 계약금액의 15%)	현금	구성원들
4 차중도금	159,450,000	15,945,000	175,395,000	4 차수 완성검사 합격 시 (총 계약금액의 15%)	현금	구성원들
잔금	212,600,000	21,260,000	233,860,000	인도 시 (총 계약금액의 20%)	현금	구성원들

※ 자재반입시는 권상기, 전동기, 제어반, 본체 등의 주요자재 (마감공사 시 반입되는 삼방틀 등 자재 제외)를 현장 또는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한 때를 말한다.

- ② 고객의 시공상 공사지연 또는 기타 고객의 사정으로 인하여 구성원들이 설치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고객은 제 1 항에서 정한 중도금을 구성원들에게 지급한다.
- ③ 고객이 지급하는 계약금은 승강기 제조 및 판매에 선 사용되기 때문에 구성원 A 에게 귀속된다.

제 3 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등)

①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첨 #1] (이하 “협정서”라 함)에 의하여 선정된 대표자는 고객 및 제 3 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당사자들이 제 5 조 제 2 항 소정의 일괄지급방식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포함한다), 사업개시신고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② 구성원들의 업무 분담 및 계약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하며, 구체적인 업무분담 내역에 대해서는 협정서에 의한다.

회사명	업무분담	계약금액	비 고
오티스엘리베이터	승강기 제조, 판매, 교체설치 등	금 993,905,000 원	구성원 A
지안승강기	승강기 교체설치	금 175,395,000 원	구성원 B

③ 승강기 시방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 조 제 2 항에 기재된 구성원들의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 및 구성원들은 본 계약 제 4 조에 따라 계약금액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단, 계약금액 총액이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구성원들이 합의한 계약금액이 기재된 “공동수급금액변경합의서”를 계약의 이행완료 후 고객에게 송부하면, 송부하는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고객이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한, 대표자가 위 공동수급금액변경합의서를 송부한 날에 변경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위 공동수급금액변경합의서는 고객의 이메일(citykukdong@gmail.com) 또는 고객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목적으로 통보한 이메일 또는 본 계약상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한다.

④ 계약조건 등이 변경되어 본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고객과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문서(변경계약 체결 권한에 관한 사전적 포괄적 위임장을 포함함)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문서의 제출로써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 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중 승강기 설치 이외 승강기 완성을 위해 필요한 비계 및 양중, 부대공사 업무에 한하여 구성원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도급할 수 있으며, 고객은 본 계약의 체결로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서면승낙에 갈음한다.

제 4 조 (계약금액의 변경)

① 본 조의 계약금액 중 구성원들의 공장출고 전에 세법 기타 법령개정과 행정시책의 변경 및 원자재 또는 운임요금의 급격한 상승 등 구성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해 가격 및 본 승강기 인도조건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고객과 구성원들은 서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당사자는 서면통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상호간에 위약금, 지체상금, 손해배상 등 여하한 명목에 따른 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② 고객과 구성원들은 총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고객의 현장소장은 고객을 대리하여 본 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제 5 조 (대금지급 방법)

① 대금지급 방법

고객은 제 2 조의 대금지급 금액을 각 구성원이 청구한 금액에 따라 구성원 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이하 "각자지급방식"). 다만, 고객은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구성원들의 대표자의 계좌로 제 2 조 내지 제 3 조의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이하 "일괄지급방식").

② 대금지급 방법의 선정

1) ■ 일괄지급방식

구성원들의 대표 계좌 ■ 계좌번호: 한국씨티은행 오티스엘리베이터 138-08782-928-05 , ㉠ 자동이체(CMS)

2) ㉠ 각자지급방식

구성원 A : ㉠ 계좌번호: , ㉠ 자동이체(CMS)

구성원 B : ㉠ 계좌번호: , ㉠ 자동이체(CMS)

구성원 C : ㉠ 계좌번호: , ㉠ 자동이체(CMS)

③ 고객이 일괄지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제 3 조 제 1 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구성원들간의 합의에 따른 시기에 구성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보험납입 주체 및 운영)

① 고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구성원들에게 지급한다.
(보험료는 본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고용보험 : 노무비 × 국토교통부 고시상의 보험료를
- 산업재해보상보험 : 노무비 × 고용노동부 고시상의 보험료를
- 국민연금보험 : 직접노무비 × 국토교통부 고시상의 보험료를
- 국민건강보험 : 직접노무비 × 국토교통부 고시상의 보험료를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상의 보험료를

② 위 제 1 항과 관련하여 고객이 원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사인 경우, 고객은 구성원들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 후 제 1 항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급 의무는 면제된다. 이 경우에도 고객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 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 7 조 제 3 항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고 법령상의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구성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성원들은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고객이 상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책임을 면함을 확인한다.

④ 구성원들은 각자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험을 가입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제 1 항에 의해 고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성원들은 각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다.

⑤ 구성원들은 제 3 항에 언급된 보험증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증서 등을 각자 보관한다

제 7 조 (계약 당사자 변경 등)

① 구성원들은 본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추가,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객(고객 본인뿐만 아니라 현장소장 등 계약체결 및 변경에 관하여 고객을 대리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게 이를 통지한다. 이러한 통지는 대표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대리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통지는 제 3 조 3 항의 이메일 또는 고객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목적으로 통보한 이메일 또는 본 계약상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한다.

② 고객이 위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통지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변경 전·후 모든 구성원들은 구성원의 추가·변경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성원들의 대표자는 위 계약 체결 후 즉시 추가·변경 계약서를 고객에게 송부하며, 구성원의 추가·변경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 한 고객은 이에 동의를 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하여 30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객이 동의를 하거나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구성원의 추가·변경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일방 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은 즉시 고객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를 중도 탈퇴하게 할 수 있다. 고객은 이에 대하여 30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일방 구성원이 환경,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2) 일방 구성원이 본 계약 제 8 조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하도급 하거나 공사에 참여 시키는 경우

3) 제 25 조에 따라 불가항력 사유가 2 개월 이상 발생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일방 구성원의 사정에 의하여 탈퇴가 필요한 경우

5) 일방 구성원이 그의 사정으로 탈퇴를 원하고 다른 구성원 전원이 탈퇴에 동의하는 경우

④ 일방 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구성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7 일 이내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이를 고객에게 통보하고 해당 구성원을 중도 탈퇴하게 할 수 있다. 고객은 이에 대하여 30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일방 구성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에 공사를 완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일방 구성원이 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3) 일방 구성원 또는 그의 종업원 및 기타 작업자가 공사거부, 태업, 직장폐쇄 또는 이와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진행을 중단한 경우

제 8 조 (하도급 등)

구성원들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제 3 조 5 항에 기한 동의 등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고객의 협력의무)

① 고객은 구성원들의 승강기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승강기 설치용 승강로 및 기계실의 축조, 건축 마감 등 기타 구성원들의 설치에 필요한 건축관계 공사 및 전기공사 등을 협조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설치착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성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② 구성원들의 시공 및 시운전에 소요되는 전력과 용수 및 자재 적재 장소는 고객이 무상 공급한다

③ 고객은 승강기법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표시 및/또는 부품안전인증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고객은 승강기의 승강기안전관리법 제 28 조 설치(수시)검사 전 승강기를 운행하는 것이 승강기안전관리법 제 28 조 및 제 80 조 제 2 항 제 5 호에 따라 1 년 이하 징역, 1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범죄임을 인식하고, 설치(수시)검사 완료 전에는 철저히 운행을 금지하기로 한다. 이를 위반하여 구성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이를 배상한다.

제 10 조 (고객의 승강기설치 중지요구)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은 구성원들에게 승강기설비의 설치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구성원들 전원이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거나 또는 회생절차개시, 파산 등에 처한 때
2. 구성원들 전원이 어음, 수표 등의 부도처분을 받았을 때
3. 고객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한 구성원들 전원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이 승강기설비 설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은 기성부분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인수하거나 또는 승강기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고객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한다.

제 11 조(구성원들의 승강기 설치중지)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성원들은 승강기 설치를 중지할 수 있다.

1. 고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 조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불을 30 일 이상 지연하는 등과 같이 계약을 위반하고 구성원들이 그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계약위반 상태를 지속할 경우
2. 구성원들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한 고객의 동의가 있을 경우
3. 제 9 조 1 항 및 제 9 조 2 항에 명기된 고객의 선이행 사항 및 지원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들의 승강기설치 중지에 있어서 구성원들은 승강기설치 중지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설치(수시)검사 및 물품의 인도)

① 구성원들은 고객의 승강기안전관리법 제 28 조 설치검사 또는 제 32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수시검사 수검을 위한 설치도면 및 사용설명서를 고객에게 제공하며(제공의 방식은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 가능), 설치(수시)검사 신청에 따른 비용은 구성원들의 부담으로 한다. 단, 설치(수시)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재검사의 비용은 검사 불합격의 귀책이 있는 측에서 부담하며, 만일 불합격이 구성원들의 귀책에 의하지 않은 경우 구성원들은 검사합격 지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구성원들은 위 승강기설비를 별첨#4 사양서에 따라 제 1 조에서 정한 납기 내에 승강기설비 설치장소에서 인도한다. 고객은 구성원들이 설치를 완료하면 설치완료확인서(인수증 등 포함)를 구성원들에게 교부하고 승강기설비를 인수한다. 설치완료는 설치(수시)검사를 합격한 시점으로 한다.

③ 고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강기설비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구성원들의 대표자가 동 승강기설비에 관한 소유권이전 또는 포기 통지하여 고객에게 도달 한 시점에 승강기설비를 인도한 것으로 본다. 고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강기설비의 인수를 거부하여 구성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은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3 조 (제품의 설명)

고객이 발주자 등 제 3 자에게 다시 제품을 인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구성원들로부터 제공받은 사용설명서, 취급설명서 등의 자료를 발주자 등 제 3 자에게 함께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인수증을 받아야 하며 제품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제 14 조 (건설공사실적증명 발급 등)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고객은 구성원들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비율에 따라 건설공사실적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각 구성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발급이 불가할 경우, 고객은 구성원의 대표자에게 본 현장에 대한 구성원의 건설공사실적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

② 본 조 제 1 항 본문의 경우, 고객은 키스콘(KISCON)에 건설공사통보대장에 따른 입력사항을 각 구성원 별로 계약체결 후 1 개월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건설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 조 (소유권유보)

① 본 승강기 설비의 소유권은 고객의 대금완불과 동시에 구성원들로부터 고객에게 이전되며, 고객은 대금완불 전에는 동 승강기설비의 사용, 이전, 분해, 매매, 양도, 제한물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성원들은 고객의 대금 완불 시까지 승강기설비가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③ 고객이 제 2 조 또는 제 3 조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구성원들은 고객에 대하여 승강기설비를 고객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구성원들에게 인도하도록 하거나 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전항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구성원들이 직접 승강기설비를 철거 또는 사용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체의 철거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한다.

⑤ 구성원들은 제 1 조 제 1 항의 대금 전액을 구성원들이 완제 받기 전까지 승강기설비를 유지할 수 있다.

⑥ 승강기 설치 후 대금완불 전까지 승강기의 실제 이용 및 관리는 고객에게 이전된 반면, 승강기의 소유권은 대금지급의 담보 목적 범위에서 구성원들에게 잔존하는바, 그 기간 동안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관리업무는 승강기의 실제 이용 및 관리 권한자인 고객이 승강기 소유자인 구성원들과의 본 계약에 의거하여 승강기안전관리법 제 2 조 제 7 호 다.목 소정의 "관리주체"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고, 구성원들을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로서의 의무로부터 면책하여 구성원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 ① 고객 또는 구성원들은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다만, 구성원들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고객은 설치장소에 반입된 구성원들의 승강기설비자재를 제 3 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7 조 (대금의 승계)

고객이 본 계약 체결 후 설치장소 부동산을 제 3 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수탁자가 본 계약에 따른 대금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 (납기의 자동연장)

- ① 고객의 부도, 구성원이 고객에게 설치도면, 디자인 사양 등 각 승인 요청 후 고객 승인 지체, 제 2 조의 대금지급 지체, 제 9 조의 고객의 협력의무 지체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기타 관계법규의 개정 등과 같이 구성원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납기는 그 지연일수만큼 자동연장 된다.
- ② 전항의 사유로 발생한 설치지연으로 인한 손해 및 이자에 대하여 구성원들은 면책된다.

제 19 조 (제품의 보증)

- ① 구성원들은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수시)검사 합격일로부터 5 년간 제품의 품질을 보증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0억 이하로 제한됨
1. 고객의 고의, 과실 및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고장이나 파손
 2. 건물하자로 인한 고장이나 파손
 3. 고객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확대된 고장이나 파손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고장이나 파손
 5. 제 3 자가 승강기설비를 보수하거나 수리한 결과 발생한 고장이나 파손
 6.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할 부품 및 소모성 부품
 7. 기타 구성원들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고장이나 파손
- ② 전항에서 정한 기간에, 고객이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성원들은 무상으로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제공(정비를 포함한다)한다. 다만 이 경우,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 부품 및 장비의 소유권이 이미 구성원들에게 귀속된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정비·교체 완료 즉시 구성원들에게 귀속한다.

제 20 조 (유지관리계약)

- ① 구성원들은 승강기설비 필증교부 또는 인도 후 12 개월간은 무상으로 유지관리점검을 한다. 구성원들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성원들의 서비스 협력업체로 하여금

유지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고객은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이를 승인한다. 본 항에 의한 고객의 승인은 구성원들이 지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와 고객(또는 승강기법에 따른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관리주체를 말함) 사이에 구성원들의 비용부담으로 위 12 개월간의 무상 유지관리점검을 위한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

② 무상유지관리점검기간 종료 후, 고객은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로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21 조 (계약금의 귀속)

① 선금금, 착수금, 약정금 등 어떠한 명칭에도 불문하고 공사착수 전, 또는 이 계약과 동시에 고객이 구성원들에게 지급한 금전 기타 유가증권 등은 계약금으로 간주한다.

② 고객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구성원들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계약금 중 전체 총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구성원들에게 귀속된다. 다만, 구성원들이 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고객은 구성원들의 계약 이행 공정 진척도에 비례하여 전체 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는 실제 손해를 구성원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본 조의 구성원들의 '이행의 착수' 시기는 통상 구성원들의 도면 승인 시로 본다. 단, 구성원들이 공장으로 발주를 내는 시기가 도면 승인 시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는, 당해 발주 시를 이행의 착수시기로 본다.

제 22 조 (대금지연보상금)

① 고객이 구성원들에게 이 계약서 제 2 조 제 1 항에 기재된 대금지급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고객은 지체일수마다 제 1 조 제 1 항의 총 계약금액에 1,000 분의 1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으로 구성원들에게 제 3 조의 계약금액 비율에 따라 지불한다.

② 이 경우 제 28 조의 손해배상청구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3 조 (부진정연대책임 등)

① 고객 또는 고객의 연대보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성원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객 및 고객의 연대보증인의 이사, 감사는 구성원들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② 구성원들은 본 계약에 따른 대금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지정하여 근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고, 고객은 즉시 구성원들을 채권자로 하여 구성원들이 고객에게 가지는 채권의 13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 자가 있는 경우는 구성원들의 선택에 따라 그 다음 순위로 위 근저당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24 조 (위험부담)

승강기가 설치현장에 반입된 후 설치완료 인도 시까지 본 건물 내의 사고, 천재지변 기타 구성원들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승강기설비의 파손, 멸실, 도난 등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위험을 부담한다.

제 25 조 (불가항력 등)

- ① 구성원들은 전쟁, 폭동, 내란, 노사분규, 노동쟁의, 법령, 정부의 규제 및 기타 천재지변 등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본 계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전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구성원들은 상당한 기간 내에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 사유가 해소되면 그 불이행 또는 지연된 의무를 수행한다.

제 26 조 (고객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고객은 구성원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나머지 구성원으로 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의 중도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거나 또는 회생절차개시, 파산 등의 결정을 받은 때
2. 어음, 수표 등의 부도처분을 받았을 때
3. 이 계약을 위반하여 고객이 그 시정을 서면최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 27 조 (구성원들의 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즉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이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받거나 또는 회생절차개시, 파산 등의 결정을 받은 때
2.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 기간이 30 일을 초과한 때
3. 고객이 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파산 등 기타 보전처분을 받았을 때
4. 고객이 어음, 수표 등의 부도처분을 받았을 때
5.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능할 때
6. 구성원들의 승강기설비 대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② 고객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구성원들은 고객에게 사전 서면통지로서 14 일간의 계약이행을 최고하고 고객이 불응 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 28 조 (손해배상)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계약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구성원들이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총 계약금액의 30%를 초과 할 수 없다.

제 29 조 (기밀유지의무)

고객과 구성원들은 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 또는 구성원들로부터 취득한 자료와 지득하게 된 사업상의 비밀(제공하는 도면 및 기타 시공상의 기술 등)을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공표되어 제 3 자가 알고 있는 사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이나 행정상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일, 고객 또는 구성원들의 기밀누설로 인해 고객 또는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기밀을 누설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 30 조 (계약조항의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 및 협정서는 본 계약의 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만일 본 계약과 협정서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 31 조 (분쟁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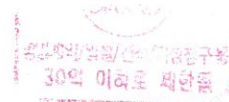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고객)을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이를 해결한다.

제 32 조 (기타)

승강기 교체 공사를 진행 한 후 해당 구청 등 관련기관에 취득세 납부 등 관련업무가 별도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별첨 건물측 부문은 고객의 책임하에 시공한다.

* 별첨 : 사양서, 건물측 공사, 건축 관련사항



제 33 조 (계약의 이해)

① 고객은 계약 체결에 앞서 본 계약서에 명기된 각 조항에 대해 구성원들의 계약 담당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한다.

② 고객은 계약 체결에 앞서 본 계약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의 관계는 상호 대등한 것으로서 하도급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객의 선택으로서 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정해진다는 점에 관하여 구성원들의 계약 담당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 계약과 같은 공동수급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한다.

제 34 조 (추가제안)

① 카내부 보양재 4 세트(시방서 기준), 야간정숙운행 실시, 벨트감시장비, 고급형 이오나이저 조작반, 카내부 게시판, 항균 LED BAR

제 35 조 (공사기준)

구성원들은 고객과 감리업체에서 작성하여 배포한 시방서를 철저히 준수하여 승강기 교체공사를 진행한다.

계약자 확인 : 풍납씨티극동아파트입대의 회장 김석철 (서명 또는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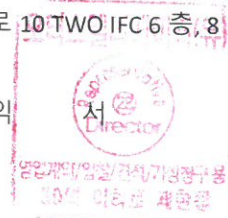
고객과 구성원들의 대표자 및 구성원은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 통씩 보관한다.

2023 년 10 월 30 일

(고객) 상 호 : 풍납씨티극동아파트입대의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한가람로 478
사업자등록번호 : 215-82-61148
대 표 자 성 명 : 김석철



(구성원 A) 상 호 : 오티스 엘리베이터 유한회사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6 층, 8 층
사업자등록번호 : 107-81-73292
대 표 자 성 명 : 대표이사 사장 조 익



(구성원 B) 상 호 : 지안승강기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9 번길 25-23 411 호
사업자등록번호 : 750-87-00483
대 표 자 성 명 : 유희근

